

제36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36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소방청장

1 시험개요

□ 관련근거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9조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조 내지 제10조

1. 선발일정

시험구분	일정	장소	합격발표
• 원서접수 (서류심사)	1. 15.(금) 10:00 ~ 1. 21.(목) 18:00 ※ 취소기간 : 1. 15. 10:00 ~ 1. 24. 18:00	119고시 홈페이지	2. 19.(금)
• 체력검사	3. 8.(월) ~ 3. 19.(금) 평일 실시	충청권 제주권 (별도공고)	3. 29.(월)
• 필기시험	5. 2.(일)		5. 18.(화)
- 인·적성검사	5. 20.(목) ~ 5. 21.(금)	충청권 (별도공고)	6. 10.(목)
• 면접시험	5. 31.(월) ~ 6. 4.(금)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차수가 의무소방원 **마지막 선발시험**임을 알려드립니다.

2. 선발인원 : 총 200명 ※ 입영시기는 병무청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구분 (원서접수 시 기수선택)	선발인원	입영시기	비고
제72기	100명	2021년 8월(예정)	
제73기	100명	2021년 10월(예정)	

3. 시험종목 및 방법

시험종목	방법	세부내역
신체검사	서류심사	제출서류로 신체검사 대체 및 적합여부 심사
체력검사	4개 종목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1200m달리기
필기시험	3개 과목	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50%+일반상식 50%)
면접시험	개별면접	면접위원이 응시자 1인을 대상으로 면접

4.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기준일 : 원서접수 마지막일

① 만 18세 이상 ~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
의무소방대관리규칙 제6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 / 병역법 제12조
 * 1992. 1. 1. ~ 2003. 12. 31. / ** 병역준비역(1급~3급) 또는 보충역(4급)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2)

-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다.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자(병역법 시행령 제129조①제5호)
 - 합격자 중 원서접수 마지막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로 판정(병무청)되면 합격 취소

③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별첨 4】

2 원서접수

1. 원서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기 간 : 2021. 1. 15.(금) 10:00 ~ 1. 21.(목) 18:00

※ 취소기간 : 1. 15. 10:00 ~ 1. 24. 18:00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없음

- ①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 / 이하 '119고시') 접속
- ② 회원등록 → 로그인(40분 초과 시 자동 로그아웃)
- ③ 입력('사진' 및 '제출서류'는 파일등록) → '작성완료' 클릭
- ④ 확인방법 : 접수증 출력(로그인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사진등록 : 사진파일(JPG, PNG 등), 해상도(100dpi 이상), 반명함(3cm×4cm)
- 사진제한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동물·식물·배경·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 첨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 제출서류[원서접수 시 파일형식으로 만들어 등록(이하 '파일등록')]

구분	제출서류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①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별첨 1】 ※ 병무청 민원포털(인터넷)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통보서 조회 및 출력(병무청 발행)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①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 【별첨 2】 ※ 2020.1.14. 이후 국립·공립·종합병원* 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병원검색 가능 【별첨 3】 ②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 신체검사 이상자 소명자료(원서접수 시 파일등록)

- ① ‘신체검사 이상자’란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및 공무원 신체검사서 검사결과가 아래 신체검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소명자료 제출(파일등록)

구분	신체검사 기준 ※ 1개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弱度)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 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② 소명자료(원서접수 시 파일등록)

- (대 상 자) 신체검사 이상자가 신체검사 이후 치료·수술 등으로 신체조건(신체검사 기준)이 지원자격에 해당하게 된 자
- (제출서류) 택 1(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2020.1.14. 이후 국립병원, 공립병원, 종합병원 발행
 - 병원장 직인과 담당의사 서명(도장)
 - 사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압인 또는 계인
- (확인사항)
 - 색각이상자 : 서류에 중증도(약도, 중등도, 강도) 표기
 - 혈압이상자 : 서류에 혈압측정 결과값 표기(결과값 표기 없이 ‘정상’으로 표기한 경우 불합격)
 - 기타 신체검사 이상자 : 서류에 그 결과값이 숫자로 표기

○ 불합격 처리기준

- 제출서류를 원서접수 기간(1.15~1.21) 내에 파일등록하지 않은 응시자
- 인터넷 원서접수 없이 서류만 제출한 응시자(우편 접수받지 않음)
- 병원장 직인·담당의사 서명(도장)이 없는 서류를 제출(파일등록)한 응시자
- 발행처가 국립병원, 공립병원, 종합병원이 아닌 공무원신체검사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응시자
(예시) 보건소, **보건의료원**, 의원, 한국건강보험관리협회, 일반병원 등에서 발급한 서류는 제출금지
- 제출된 신체검사 관련 서류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응시자
- 신체검사 시 약물 등을 복용 후 신체검사를 받은 응시자

③ 신체검사서 등 제출서류 심사

1. 서류심사

- 심사기간 : **1. 28.(목) ~ 2. 10.(수)**
- 심사장소 : 소방청 지정장소
- 신체기준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 【별첨 4】
- 심사방법 : 제출서류로 신체검사 대체 → 적합여부 심사

구분	심사서류(진단서 등 제출된 서류 포함)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①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국립병원, 공립병원, 종합병원 발행) ②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2. 합격확인

○ 합격자 · 불합격자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 기 간 : **2. 15.(월) 14:00 ~ 2. 16.(화) 18:00**
- 공개방법 : 119고시 홈페이지(접속 → 로그인 → 성적조회)
-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내용 : 제출서류에 대한 합격 · 불합격 여부
 - ※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에는 **서류보완 불가함**
- 이의제기 방법 : 로그인 → 질의응답 → 글쓰기(아래쪽 위치) → 분류 / 원서접수*

* 이의제기 서식

1. 응시번호 / 2. 응시자 성명
3. 이의제기 내용 기재

- 이의제기 답변방법 : **2. 17.(수)** / 119고시 홈페이지 답글

○ 합격자 공고 : **2. 19.(금)** /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4 체력검사

1. 사전안내

○ 체력검사 장소 공고

- 일자 : **2. 22.(월)** /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 장소 : 충청권, 제주권 → 원서접수 후 시험장소 변경 불가

○ 체력검사일 선택

- 기간 : **2. 23.(화) 14:00 ~ 2. 24.(수) 18:00** / 119고시 홈페이지
- 방법 : 선착순(미선택자는 소방청에서 임의배정)
 - *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응시자 원서접수 주소지(시도별) 기준으로 임의배정 후 시행
- 대상 : 신체검사(서류심사) 합격자

○ 응시표 출력

- 일자 : **3. 3.(수)~** / 119고시 홈페이지
- 시험일 준비물 : 운동복(상·하의), 운동화, 응시표, 신분증*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2. 시험당일

○ 체력검사 일정

충청권	제주권
3. 8.(월) ~ 3. 19.(금) ※ 평일 실시	3. 12.(금)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등록 완료(이후 시험응시 불가)

○ 종목 및 합격기준 【별첨 5】

종목	①제자리멀리뛰기	②윗몸일으키기	③50m달리기	④1,200m달리기
합격기준	205cm이상	26회 이상 (1분)	8.5초 이내	6분19초 이내

※ 1개 종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처리됨

○ 검사관정 : 대한육상연맹 추천 관정관(종목별 1명)

3. 합격확인

○ 합격여부 사전공개

- 기 간 : 3. 24.(수) 14:00 ~ 3. 25.(목) 18:00
- 방 법 : 119고시 홈페이지(접속 → 로그인 → 성적조회)
- 내 용 : 체력검사 합격 · 불합격 여부
- 이의제기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점수 문의 → 체력 이의제기*

* 체력 이의제기 서식 | 1. 응시번호 / 2. 응시자 성명 / 3. 이의제기 사유

○ 합격자 공고 : 3. 29.(월) /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5 필기시험

1. 필기시험

○ 필기시험 장소 공고

- 일자 : **4. 16.(금)** /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 장소 : 충청권, 제주권 → 원서접수 후 시험장소 변경 불가
- 대상 : 체력검사 합격자

○ 응시표 출력

- 일자 : **4. 26.(월)~** / 119고시 홈페이지
- 준비물 :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응시표, 신분증*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시험일시 : **5. 2.(일)**

입실완료 시간	시험 시간
10:30분 까지	11:00 ~ 12:00(60분)

○ 시험과목 : 3과목(국어, 국사, 일반상식)

- 문항 및 시간 : 60문항(과목별 20문항), 총 60분(1문항 1분)

2. 출제문제 이의제기 등

○ 문제지 및 가(정)답안 공개 일시 : **5. 2.(일) 16:00**

- 장소 : 119고시 홈페이지

○ 이의제기

- 운영기간 : **5. 2.(일) 16:00 ~ 5. 3.(월) 24:00**
- 장소 : 119고시 홈페이지
- 방법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이의제기서 **【별첨 6】** 첨부*
- *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내용 :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 ※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3. 필기시험 점수 등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 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 : **5. 12.(수) 14:00 ~ 5. 13.(목) 18:00**
- 공개방법 : 119고시 홈페이지(접속 → 로그인 → 성적조회)
- 공개내용 : 응시자 본인 필기시험 점수
- 이의제기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점수 문의 → 점수 이의제기*

* 점수 이의제기 서식	1. 응시번호 / 2. 응시자 성명 3. 사전공개점수(과목A 80, 과목B 60, 과목C 70) 4. 본인채점점수(과목A 85, 과목B 65, 과목C 75)
--------------	---

- 이의제기 답변방법 : **5. 14.(금)** / 119고시 홈페이지 답글

4.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 공고일시 : **5. 18.(화) 14:00**
- 공고방법 : 소방청 또는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 필기시험 합격기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조) • 합격대상 :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120%)의 범위 안에서 결정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
--

6 면접시험(인·적성검사)

1. 인·적성검사

- 검사기간 : **5. 20.(목) ~ 5. 21.(금)**
- 검사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검사방법 : 집합검사 또는 인터넷(모바일 포함) 검사
- 검사내용 : 성격유형 검사(PAI) ※ 면접시험 기초자료로 활용

2. 면접시험

- 면접시험 장소 공고 : **5. 18.(월)** / 119고시 홈페이지
-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면접시험일 선택

- 기간 : **5. 20.(목) 14:00 ~ 5. 21.(금) 18:00** / 119고시 홈페이지

- 방법 : 선착순(미선택자는 소방청에서 임의배정)

*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응시자 원서접수 주소지(시도별) 기준으로 임의배정 후 시행

○ 응시표 출력 : **5. 26.(수)~** / 119고시 홈페이지

-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시험기간 : **5. 31.(월) ~ 6. 4.(금)** ※ 해당일 시험시작 30분전 등록완료

- 시험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면접방법 : 개별면접

- 면접내용 : 국가관, 소양, 용모품행, 성격

※ 의무소방대관리규칙 [서식 2]의 평가항목 중 일반상식은 생략

7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 공고

○ 공고일시 : **6. 10.(목) 14:00**

○ 공고방법 : 소방청 또는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 **최종 합격기준** → 관리규칙 제10조

• 면접시험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결정

• 동점자 발생 시 합격결정 순위

①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 ②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2. 최종 합격증 발부

○ 발부기간 : **6. 14.(월) ~ 6. 16.(수)**

○ 발부대상 : 최종 합격자

○ 발부방법 :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발송

8 주의사항

1. 공통사항

○ 신분증 미지참 응시자는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합니다.

- 인 정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불인정 :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
- ※ 각 시험별 응시표 출력 후 → 해당 시험절차 지참

- 응시자는 모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시험 실시 건물)에 입장 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됩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 및 공지 사항(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 시험장의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학교) 전 지역은 금연지역입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시행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모든 시험은 지정된 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KF94, 코와 입 막음)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응시자와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시험에서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 확진환자와 자가격리자는 모든 시험에서 응시가 불가합니다.

2. 원서접수[신체검사(서류제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파일등록(인터넷 접수시) 해야 합니다.
※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 병무청에서 발행한 pdf파일 그대로 사용(파일등록) 가능
-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는 응시자 본인이 병무청을 방문·발급 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하여 제출(파일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파일등록)하는 응시자는 본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에 접속하여 국립·공립·종합병원 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신체검사를 예약 후 방문,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원서접수 시 제출(파일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체검사 서류제출(파일등록)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색각, 혈압 또는 신체검사 이상자는 국립·공립병원,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 후 시험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응시자는 반드시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파일등록)하여야 합니다.(신체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파일등록)
- 응시자격 판단은 제출(파일등록)된 서류로 판단하며, 신체적합 및 서류제출(파일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소명해야 함
-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 초본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험 단계별로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면접시험 ~ 최종합격
 - 제출서류 :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별첨 7】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팩스 제출 불가)

3. 체력검사 유의사항

- 체력검사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검사 세부 운영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체력검사 중 판정관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검사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체력검사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촬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체력검사 등록 시 체력검사 영상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검사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검사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사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체력검사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검사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검사 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체력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스파이크 신발 등)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4. 필기시험 유의사항

-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 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표기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채점이 불가하거나 중복인식 등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능한 경우
-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한 경우
-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 등 예비표기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 필기시험의 득점은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됩니다.

-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책형(A형·B형)을 확인하여 답안지에 표기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페이지수와 인쇄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문제지를 교체합니다. 교체 요청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벨 또는 음악 방송 즉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거나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시험 중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만으로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전산기기 등
 - ※ 통신장비를 지참한 경우 시험실시 전 시험실 전면에 제출(통신장비 전원 OFF)하여야 하며,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내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험실시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은 시계인 경우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방송(벨)으로 안내되는 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앞면, 뒷면)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 응시자가 필기시험 중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감독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5.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 ※ 입영기일이 29일 이내의 자(지원 자격이 없는 상태)가 의무소방원에 지원하고 추후에 연기하는 경우, 접수 시에 위법이 있고 추후에 연기하더라도 그 위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접수를 취소하고 입영연기를 한 후에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 입영기일이 29일 이내의 자(지원 자격 없는 상태)는 시험에 최종 합격 하더라도 추후에 병무청에서 위법상태가 밝혀져 합격이 취소됩니다.

6. 기타사항

- 인·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력검사일, 면접시험일 희망일자 신청을 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에서 임의배정한 일자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하여 희망일자를 신청받지 아니할 경우, 원서접수 시 등록한 주소를 기준으로 시도별로 임의배정한 후 시험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문자안내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여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및 공고사항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는 모두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니,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제외시간 : 휴일, 점심시간 11:30~13:00)

◇ 시험문의(체력, 필기, 면접)

- 문의처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 (044) 205 - 7287~94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 우편번호: 30127

◇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SE코리아 ☎ (053) 474 - 1212

- 별첨
1.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3. 병원(국립 · 공립 · 종합) 확인방법. 1부.
 4.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 1부.
 5. 의무소방원 체력검사 측정기준. 1부.
 6. 의무소방원 선발 필기시험문제 문의(질의)서 1부.
 7.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끝

<별첨 1>

병역판정검사 규정[별지 제27호 서식]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앞쪽)

신체검사일								
수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 판정 신체 검사 사항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	시력		혈압(mmHg)		
	cm	kg		좌	우	수축기	이완기	
	색각	안과	내과	외과				
				일반·흉부·신경		정형·성형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	치과	혈액형	
	임 상 병 리 검 사							
	간기능		간 염		혈뇨	단백뇨	당뇨	혈당 검사
	AST	ALT	B형	C형				
혈구검사(CBC Count)				현미경검사(혈뇨 또는 단백뇨 '이상'일 경우)				
WBC	RBC	HB	PLT	M-WBC		M-RBC		
병역처분 등	신체등급				병역처분			
	학력				재학연기			
이상이 있는 검사 과목 병명								

참 고 사 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안내사항						
연령별 병역의무 이행과정	19 세		20세이상 ~ 35세까지 (기피자등은 37세까지)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31까지	40세까지	45세까지
	병역 판정 검사	현역 병 입영대상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	향토예비군 복무	예 비 군 추가편성	전시 병역의무 기간연장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병역제외			
역종별 병역복무 내용	역종별		복무내용			복무기간
	현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결정된 징집순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현역 (상근예비역)		현역복무 5주(군사교육)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 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근무			
	보충역		○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또 는 행정업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 다만,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은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군사교육을 받지 아 니하고 바로 위 복무기관에 소집되어 복무			24개월
	전시근로역		전시에 근로소집되어 군사 지원업무 수행			
임상병리 검사 결과	AST(간기능검사) * 지방간, 급·만성간염		정상 : 0 ~ 40(IU/L)	ALT(간기능검사) * 지방간, 급·만성간염	정상 : 0 ~ 41(IU/L)	
	B형 간염(보균여부)		음성 : 정상, 양성 : 이상	C형 간염(보균여부)	음성 : 정상, 양성 : 이상	
	단백뇨(신장, 방광)		정상 : 1+ , 이상 : 1+ <	혈당검사(당뇨병)	정상 : 74 ~106mg/dl	
	혈뇨(신장, 방광)		정상 : 현미경 경검상 적혈구 0 ~ 4개(고배율)	혈액형검사	'모름'으로 표시한 경우만 검사 ※미검사자는 본인진술내용 표기	
	신장기능검사 등 5종			병무청 홈페이지-나만의 홈페이지-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확인		

유의사항

- 「병역법」 제14조의2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제77조의2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재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변경 등으로 다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종전의 사항이 본 통보서의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사항으로 변경되며, 일부 과목만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받지 아니한 과목에 대하여는 기존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가 표시됩니다.
- 신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신장·체중은 검사 당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 소집대상자는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다음해 5월 중 입영일자를 결정(현역입영대상자에 한함)하여 E-mail과 안내문을 통해 알려드리며 홈페이지와 ARS(1588-9090)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입영신청 방법 및 접수 시기(경로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 현역병입영 대상 :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접수 : 3월부터, 선택 : 다음연도 입영월)
 - * 20세 이상자는 '당해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이 가능함
 - 사회복무소집 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12월), 재학생 입영원
 -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적정 등을 고려하여 전산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대학교·고교 재학생(등록금 납부자, 휴학생 포함)은 자동으로 입영연기 되며, 대학 재학생이 입영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별지서식)

(앞쪽)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사 진 (3cm × 4cm)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가슴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우: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우: ()
안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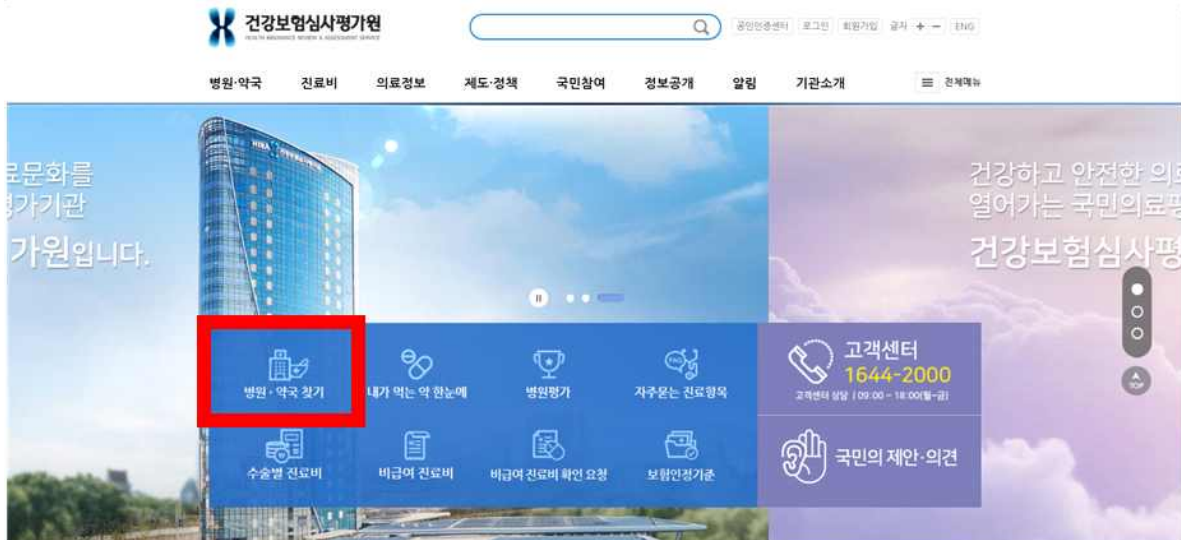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 판정 오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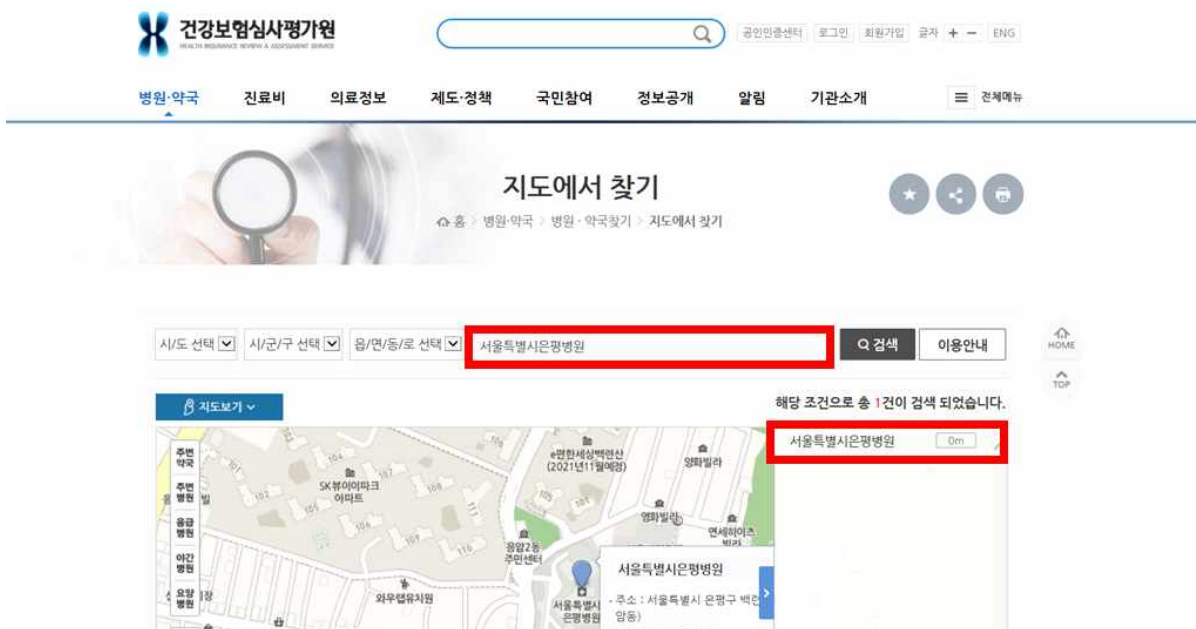
<별첨 3>

병원(국립·공립·종합) 확인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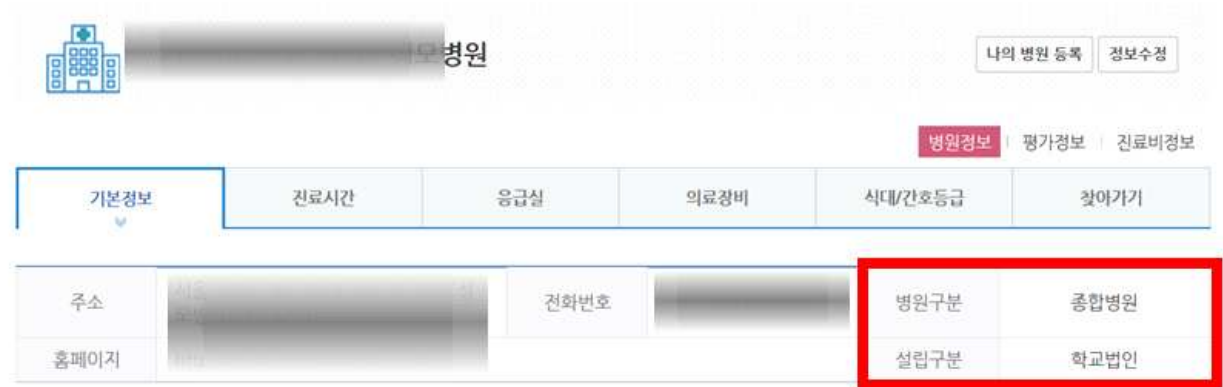
-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main.do>) 접속
- ② 병원약국찾기 클릭



- ③ 병원명 입력 → 검색 클릭 → 병원명 클릭



④ 기본정보의 병원구분(상급종합·종합병원) 또는 설립구분(국립·공립)에서 여부 확인



병원

나의 병원 등록 정보수정

병원정보 | 평가정보 | 진료비정보

기본정보	진료시간	응급실	의료장비	식대/간호등급	찾아가기
------	------	-----	------	---------	------

주소	전화번호	병원구분	종합병원
홈페이지		설립구분	학교법인



병원

나의 병원 등록 정보수정

병원정보 | 평가정보 | 진료비정보

기본정보	진료시간	응급실	의료장비	식대/간호등급	찾아가기
------	------	-----	------	---------	------

주소	전화번호	병원구분	병원
홈페이지		설립구분	공립



병원

나의 병원 등록 정보수정

병원정보 | 평가정보 | 진료비정보

기본정보	진료시간	응급실	의료장비	식대/간호등급	찾아가기
------	------	-----	------	---------	------

주소	전화번호	병원구분	상급종합
홈페이지		설립구분	공립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구분	합격기준 (※ 1개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弱度)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참조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 준용)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 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의무소방원 체력검사 측정기준

□ 체력측정 기준

연번	종 목	측정방법	합격기준
1	윗몸일으키기	1회 측정, 횡수기록	26회 이상 / 1분
2	50m 달리기	1회 측정, 시간기록	8.5초 이내
3	제자리 멀리뛰기	2회 측정, 최고기록	205cm 이상
4	1,200m 달리기	1회 측정, 시간기록	6분 19초 이내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50m 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

□ 체력측정 방법

1. 윗몸일으키기 : 양발을 30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횡수를 측정)
2. 5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점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3. 제자리멀리뛰기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
※ 발 구름판을 넘는 경우 파울로 실격처리
4. 1,2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별첨 7>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 이름변경 등 사유발생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재채용팀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

1. 접수자 인적사항

시험명	제00차 의무소방원 선발		
성명		응시번호	
전화번호	☎ :	휴대폰 :	

2. 정정신청 내용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정정사유

4. 첨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록(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